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흡연 및 간접흡연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함.(안 제4조)
-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의 방법 구보에 고시, 금연구역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함.(안 제7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안 제10조)

-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함.(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 5. 2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구 관할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를 구보에 고시토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부여함
- 안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시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8조제1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어린이 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등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8조제2항에 흡연구역 설치자 준수사항으로 흡연구역 시설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9조에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 안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 2011. 2. 1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연구역 지정시기, 금연구역 범위, 과태료 부과액 10만원 일원화, 2012. 1. 1일 조례 시행일 등을 반영

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함.

-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제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중 “금연홍보대사 등을” 이란 자구를 삽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9조 제3항 중
“자원 봉사자(“자원 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을
“자원 봉사자(“자원 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3호
----------	-----------

제안년월일 : 2011. 7.

제출자 : 고기판 위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중 “금연홍보대사 등을” 이란 자구를 삽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 제3항 중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9조 제3항 중

“자원 봉사자(“자원 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을

“자원 봉사자(“자원 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u>자원봉사자</u>(“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u>자원봉사자</u>(“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u>금연홍보대사 등을</u>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제 63 호
----------	--------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중심!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 사항을 규정

나.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바.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설치·운영 가능

사. 제10조(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5.19 ~ 6.8)결과 : 제출의견 1건 접수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흡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사)한국담배 소비자협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미반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광범위한 실외 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오히려 규제 준수율만 떨어뜨릴 것	미반영	-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정대정화구역, 금연거리는 기존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하던 장소로 이미 충분한 홍보 및 계도가 되어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음 - 대중이 이용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토 시행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위임범위가 모호하거나 포괄적	미반영	-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 시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홍보 수행 - 지정된 금연구역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후 예산,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검토 설치함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	미반영	- 과태료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가 우선 목적이며 서울시에서 정한 금액과 같음 액수임 - 과태료 액수 변경시 각 자치구마다 과태료 액수가 달라져 구민들의 혼란 초래